

대한장연구학회 우덕 연구비

제정: 2019 년 2 월 15 일

제 1 조 목 적

본 규정은 우덕윤덕병재단의 회사금을 재단의 뜻에 따라 장연구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연구 발전에 공헌이 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명 칭

본 연구비의 명칭은 '대한장연구학회 우덕 연구비'라고 한다.

제 3 조 지급대상

지급대상의 연구과제는 소장 및 장내미생물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장질환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결정하고 연 1 또는 2 건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조 지급대상자의 자격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으로서 5 년 이내에 대한장연구학회 공식학회지 Intestinal Research 에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이어야 하며,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.

제 5 조 추천구비서류

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본 연구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신청서 (소정양식)
- 2) 이력서
- 3) 연구계획서, 연구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(저서 및 논문 등의 파일)

제6조 연구과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

제 1항.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당해년도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.

제 2항.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.

제 3항.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연구과제 결정

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제 8 조 연구비 지급

본 연구비는 매년 개최되는 대한장연구학회 정기총회에서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.

제 9 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

연구결과는 수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제학술지(SCI, SCIE 등재지) 혹은 Intestinal Research 에 우덕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연구비 환수

제 4 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 9 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.

제 11 조 부칙

제 1 항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
제 2 항. 본 규정은 본 학회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,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